

## SAMC | LAW REVISION

## 1. 핵(核)원료물질 ‘우라늄광·토륨광’도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핵(核)원료물질인 우라늄광과 토륨광도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됐다. 앞으로 이들 물질을 수출입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면제’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지정 요청에 따라 우라늄광과 토륨광을 추가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사항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6월 5일 수출입신고 분부터(수출입요건은 즉시 시행) 적용하며, 추후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Read More](#)

## 2. “스마트폰을 PC처럼” 도킹 스테이션은 어느 호에 분류할까?

관세청은 ‘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도킹 스테이션 등 8건의 수출입물품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전국세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알렸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기기를 연결해 스마트폰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이므로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봐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했다. 이 외에도 IoT 스마트 플러그, LED 모니터 등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Read More](#)

## 3. 일시 수출입차량 재수출입신고, 이제 원하는 공·항만 세관에서!

일시 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 신고를 해당 차량을 반출입하려는 공·항만 세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일시 출입국자의 편의를 고려해 최초 수출입 통관지 세관에서만 할 수 있던 기존 재수출입 신고 원칙을 없앤 것이다. ‘자동차 일시 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에는 제조국, 제조자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 성명, 여권번호 등 운전자 관련 항목을 일부 추가했다. 관세청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 TRADE TREND

### 1. 6월 23일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 폐지

6월 23일부터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근무제가 사라지고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원활한 對民 행정을 위해 6월 23일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를 폐지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에 오는 6월 23일부터 원활한 對民 행정을 위해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를 폐지하고, 상시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한다. 단, 인천공항 지역 통관부서는 변동사항 없이 기존처럼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Read More](#)

### 2. 美, 7월 6일부터 중국産 1,102개 품목에 관세부과

KOTRA 워싱턴무역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월 15일 관세를 부과할 중국産 1,102개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며, "기존에 발표한 현미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차세대 제조업 육성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제품 284개 품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을 무시하고 WTO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즉각 반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ead More](#)

### 3.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오는 8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EU도 관세장벽 높인다, 철강 수입감시제도 설명문 발표

KOTRA 브뤼셀무역관은 “6월 12일 EU 집행위원회가 역외국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수입감시제도에 대한 설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역외국이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EA 국가를 제외한 모든 非EU 국가를 말한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EU의 수입감시제도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염두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수입 급증이 확인되는 경우 긴급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2. 산마리노공화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중 산마리노공화국(Republic of San Marino)의 번호체계 구성이 일부 변경됐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6월 7일 EU 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변경됐으며,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기존 산마리노공화국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구성 중 인증연도가 인증번호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연도(2)/최초승인연도(4)’가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2)/최초승인연도(4)’로 바뀌었다.

[Read More](#)

## 3. 멕시코, 미국 비롯한 非FTA 체결국가 철강에 관세부과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은 멕시코정부가 6월 5일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하며, “미국의 결정은 관세 및 국제무역에 반하는 조치로, NAFTA 긴급조치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멕시코정부는 미국産 철강제품에 15~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정부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까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QUARANTINE TREND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편집 체계 통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18.3.13)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해당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표시, 축산물에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시 함량 규정 삭제 및 통칭명칭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함량 표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했다.

[Read More](#)

### 2.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예규(제110호) 일부개정

식약처 소관 시험·검사 등의 잔여검체 처리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잔여검체 반환신청서는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제출하고, 신청자 및 사용 용도 확인을 위해 위임장,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반환되는 잔여검체의 관리를 위해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의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ead More](#)

### 3.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천연유래 인정대상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한한다. 천연유래를 인정받으자 하는 자는 과학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천연유래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ERTIFICATION TREND

## 1. 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의무 부과

전안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 마크 부착 의무 등이 부과된다. 14 가지의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성적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3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제조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 의 확인을 받아 면제가 가능하다.

[Read More](#)

## 2. 전안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구분 변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 안전인증 대상 ② 안전확인대상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3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7.1 부터는 3 단계에 추가하여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다.

[Read More](#)

## 3.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2]	•가족제품 •화장비누
생활[19]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
섬유[2]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